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32호서식]

○ ○ ○ (기 관 명)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 ○○지방공소청 발 신 ○○○

제 목 체류부적당 통보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㊞

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,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, 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에 따라 통보를 신청합니다.

대 상 자	성명 ()		
	생년월일 (세)	성별	남 · 여
	국적		
입국(상륙) 허가일자			
비 고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